

# Deloitte Insights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세무 영향 검토

내년초 시행 글로벌 최저한세 국내 250개 기업 과세 영향권

신창환 전무, 스캇 올슨 전무

# 리더 메시지



Tax Partner  
신창환 전무

글로벌 최저한세인 필라2는 디지털화되는 기업 환경 속에서 다국적 기업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각국의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저지하고자 마련된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이를 법제화하여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대상 기업들은 필라2에 따른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액을 적절히 공시하기 위해 최소한 2023년 말까지 필라2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을 완료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게 될 기업들은 향후에 늘어날 조세 부담을 예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사적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수립해야 합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도입배경



다국적 IT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가 대두되고,  
디지털 경제에서 필라1으로 해결되지 않는  
조세회피 문제 방지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들도  
대비해야 하는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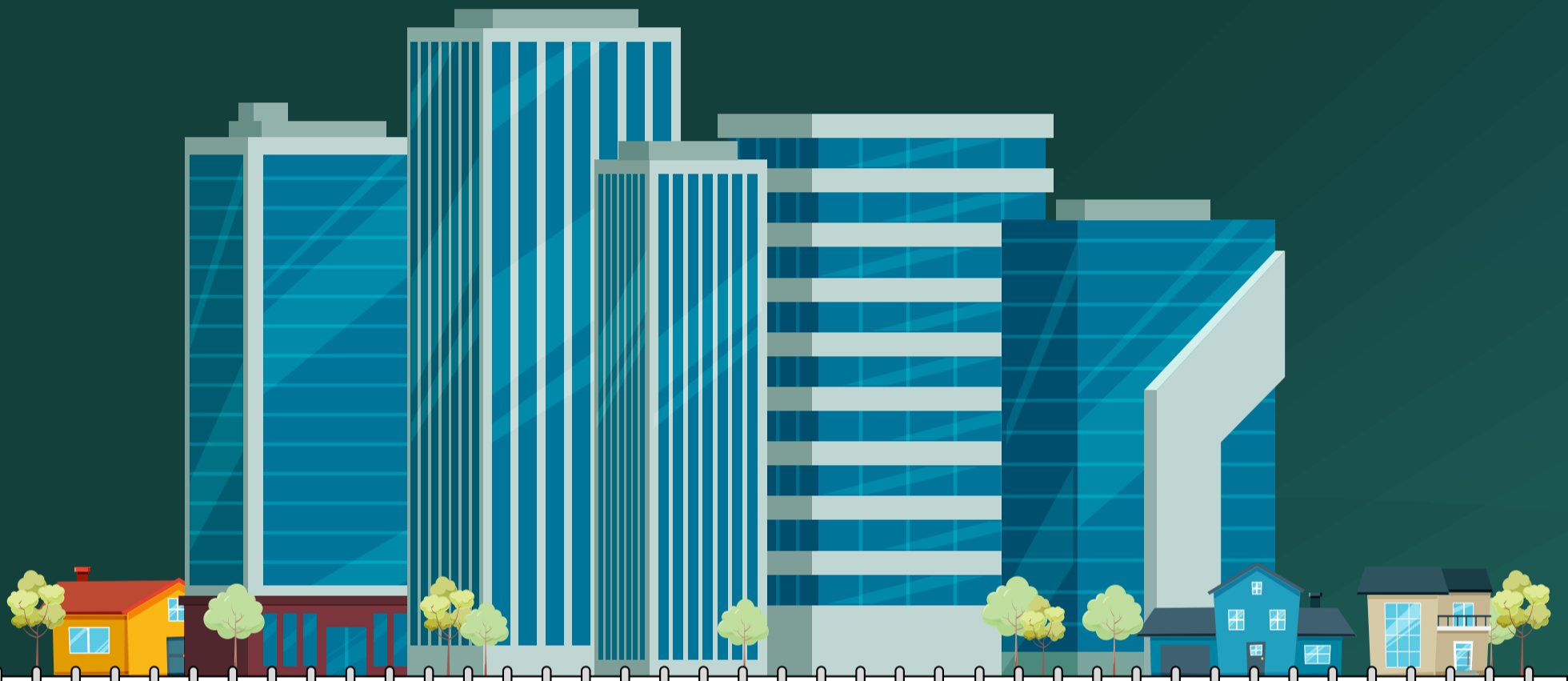
#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개요



과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137개국이 최저한세(필라2)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먼저**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도입,  
**2024년 1월 시행 예정**



#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적용대상



필라2 제도의 대상법인(in-scope)은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으로

동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  
고정사업장 등(구성기업)은 필라2 계산의 기본단위

# 추가세액 계산구조



추가세액 =

$$[\text{①(필라2 순소득)} - \text{②(실질기반 적용제외)}] \times [(\text{글로벌 최저한세(15\%)} - \text{③(실효세율)})]$$

## ① 필라2 순소득 = GloBE Income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 ② 실질기반 적용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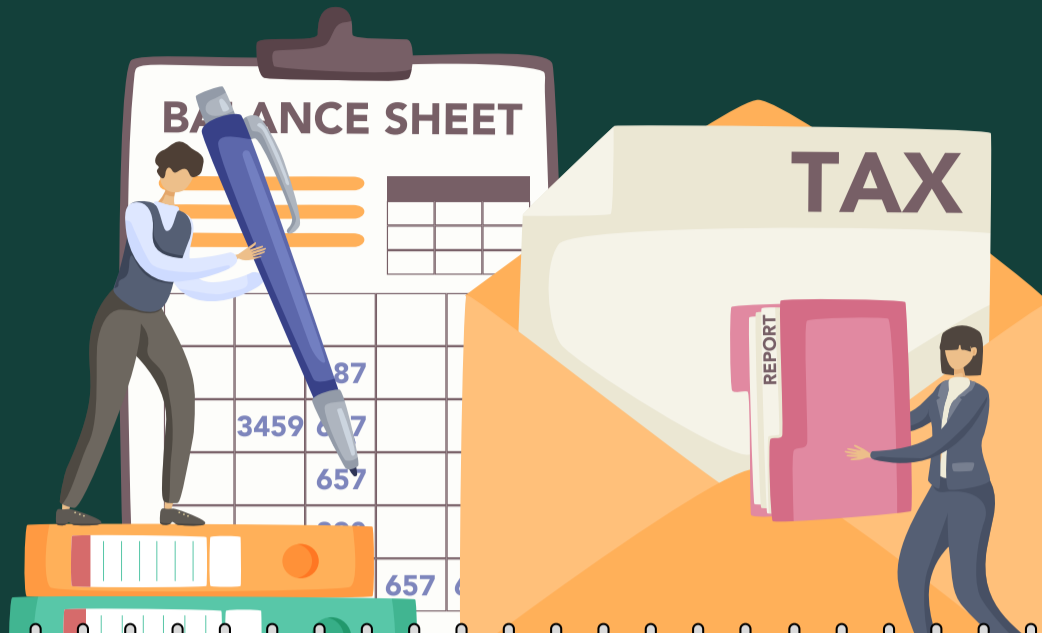
- ✓ (유형자산 장부가치) x 5% (2024년 7.8%) + (급여비용) x 5% (2024년 9.8%)
- ✓ 경과기간 10년간은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8%, 급여의 10%를 공제하되 공제비율은 첫 5년간은 연 0.2%씩 감소하고 마지막 5년간은 유형자산은 연 0.4%씩, 급여는 연 0.8%씩 감소

## ③ 실효세율

✓ 국가별 계산구조 =  $\frac{\text{해당 국가 소재 구성기업들의 대상조세 합계액}}{\text{순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금액(A+B)}}$

-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0 또는 음수일 때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않음
- ✓ 소수구성기업, 공동기업은 별도 산식에 따라 계산함

# 추가세액 신고 납부 방법



- ✓ 해외 자회사가 저율과세 되는 경우, 최종 모회사 과세지국에 과세권 부여
- ✓ 만약 최종 모회사 소재국이 과세하지 않는다면 바로 다음 하위 모회사 소재국에 과세권이 넘어감
- ✓ 즉, 최종 모회사가 저율과세되거나 모회사 소재국이 과세하지 않는 경우  
→ 다국적기업 그룹 내 다른 구성기업 소재국들에게 과세권이 부여됨

각 구성기업 별 실효세율을 먼저 산출



필라2 순소득과 실질기반 적용제외 금액을  
결정하여 추가세액을 산출



해당 추가세액을 납부할 Entity를 결정

# 필라2 준비 [고려사항]

연결대상 종속회사 중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지 판단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실효세율 계산 및 적용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판단과 협의 필요

## 명목세율

- ✓ 저세율 국가에 포함되는 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해외 국가의 명목 법인세율을 고려해야 함
- ✓ 한국 대기업을 많이 진출 되어 있는 국가들 중 헝가리, 아일랜드, UAE, 홍콩, 싱가포르 등은 대표적인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

## 영구적 차이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 ✓ 해외 자회사가 속한 국가에서 해외 자회사의 법인세 신고 시에 익금불산입, 손금산입의 영구적 차이의 세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법인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 저세율 국가에 속할 확률이 높음

## 세액감면, 세액공제, 보조금

- ✓ 한국 대기업을 해외법인 투자에 있어, 해당국가에서 외국인투자에 세액감면을 부여하거나, 대규모 투자에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현금 보조금에 대해서 비과세 저율과세)에는 저세율 국가에 포함될 확률이 높음

# 필라2 준비 [Why Now?]



왜 필라2 제도에 대한 준비가 지금 필요할까?

## 01 관련 정보 주석 공시

- ✓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일부 다국적기업은 당기 평균 유효세율 15% 미만인 국가명, 가중평균 유효세율 등 정보 주석 공시

## 02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 ✓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이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개정 기준 발표('23년 2분기 예상) 즉시 적용

## 03 2023년 준비 요구

- ✓ 일부 다국적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시행 전에도 공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2023년에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 딜로이트 세무자문 전문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로 기업이 직면하는 세무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세무자문 본부는 업종과 업무 유형에 특화된 전문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과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이 세무관련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 하는 데 기여합니다.

## Contact Point



### 신창환 전무

Tax Partner | Business Tax

Tel: 02 6676 4583  
Email: chanshin@deloitte.com



### 스캇 올슨 전무

Tax Partner | Tax-M&A

Tel: 02 6676 2012  
Email: scoleson@deloitte.com



### 김선중 파트너

Tax Partner | Business Tax

Tel: 02 6676 2518  
Email: sunjoongkim@deloitte.com



### 민지선 이사

Tax Director | Business Tax

Tel: 02 6676 2811  
Email: jimin@deloitte.com



### 김희진 이사

Tax Director | Business Tax

Tel: 02 6099 4625  
Email: heejinkim2@deloitte.com

## 자료문의

E-mail : krinsightsend@deloitte.com

Tel : (02)6099-4651 / (02)6676-1414

# Deloitte.

## Insights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 컨설팅  
성장전략본부

**손재호 Partner**  
성장전략본부 리더  
jaehoson@deloitte.com

**정동섭 Partner**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dongjeong@deloitte.com

**김사현 Director**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sahekim@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